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포항시보

제 831호 2011. 5. 24(화)

◀ 고 시 ▶

- 포항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제2011-37호) 2
- 하천점용허가 고시(제2011-40호) 6

◀ 공 고 ▶

-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(제2011-52호) 7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1 - 37 호

포항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포항시 남구 호동 39-3번지 일원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(RDF)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관리계획(용도지역, 전기공급설비, 가스공급설비, 폐기물처리시설)의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1년 5월 19일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
- 또한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		구성비 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합 계	45,052	-	45,052	100.0	
자연녹지지역	45,052	감) 45,052	-	-	
일반공업지역	-	증) 45,052	45,052	100.0	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 (m ²)	용적률	결정(변경) 사유
		기정	변경			
1	포항시 남구 호동 39-3번지 일원	자연 녹지 지역	일반 공업 지역	45,052	350%	•용도지역의 특성유지와 해당시설물의 건폐율 기준충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나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1)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신설	14	전기 공급설비	호동 산39	-	증) 45,052	45,052	-	폐기물 처리시설과 중복결정

■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유
14	전기공급설비	• 전기공급설비 신설 -A = 45,052m ²	•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전용 보일러시설 설치를 위해 전기공급설비를 신설함

2) 가스공급설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폐지	1	가스 공급설비	호동 산29	31,603	감) 31,603	-	경북고 제232호 (89.11.14)	-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가스공급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스공급설비 폐지 -A = 31,603m²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전용 보일러시설 설치를 위해 현재 가스공급설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정 시설을 폐지함

3) 폐기물처리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변경	3	일반폐기물 처리시설	쓰레기 매립장	호동 산32	427,464	감) 4,438	423,026	경북고 제268호 (92.8.27)	-
신설	12	일반폐기물 처리시설	재활용 시설	호동 39-3	-	증) 45,052	45,052	-	전기공급 설비와 중복결정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3	일반폐기물 처리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변경 : 면적 축소 -A=427,464m²→423,026m² (감 4,438m²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전용 보일러시설 설치를 위해 호동 쓰레기 매립장부지 일부를 신설 재활용 시설부지로 편입시킴
12	일반폐기물 처리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변경 :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-A = 45,052m²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전용 보일러시설 설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함

3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: 붙임 도면과 같음(도면 실음 생략)

4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uris.moct.go.kr>)에서 열람 가능하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(도시계획과 054-270-3466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

포항시 고시 제2011-40호

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

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1088-1번지 외 1필지(지방하천 : 화대천)내에 골재채취반출로 설치 목적의 하천점용(공작물의 신축)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
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

포 항 시 장(인)

2011. 05. 23

□ 하천점용(공작물의 신축)허가 내용

하천명	점용위치		점용목적	점용면적(m ²)		점용기간		점용자	비고
	읍면동	지번		일시	영구	일시	영구		
화대천 (지방하천)	기계면 내단리	1088-1	반출로 설치	5,469		2011.05.23		대왕기업(주) 김 정 상	
	기계면 현내리	1153-36		389		2011.12.31			

공 고

포항시 공고 제2011 -52 호

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

포항 도시계획시설(대로1류11호선)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11 . 5. .

1. 사업시행지 :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43-28번지 일원

2. 준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
- 명 칭 : 대로1류11호선(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진입도로)

3. 사업의 규모

- L = 327.3m, B = 12m, A = 6,472m²

4. 사업시행자 : 포항시장

5. 사업 시행기간

○ 2010. 2. 25 ~ 2010. 12. 31

※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교통행정과(270-3661) 및 도시계획과 (270-3475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